

##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나. 개정사유

-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개정 (안 제1조)
- 조의제목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하고,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개정 (안 제2조)
- "반의 확정기준은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하되"를 "반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되"로 개정 (안 제3조)
-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를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 (안 제10조 제1항)
-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을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으로 개정 (안 제12조)
- "실비의 변상을 하고 상여금을"을 "실비와 상여금을"로 개정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97-67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개정 (안 제1조)
- 조의제목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하고,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개정 (안 제2조)
- "반의 확정기준은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화되"를 "반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 하되"로 개정 (안 제2조)
-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한다"를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통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 (안 제10조 제1항)
-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을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으로 개정 (안 제12조)
- "실비의 변상을 하고 상여금을"을 "실비의 상려금을"로 개정 (안 제13조)

##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제목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하고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한다.

제3조중 "반의 확정기준은 자연 부락 단위로 구성하되"를 "반은 지역부락 단위로 설치하되"로 한다.

제4조중 "시행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있는자 중에서 주민의 총의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

제6조 제2항중 "돌림식으로 선정하되"를 "선정하되"로 한다.

제7조 제목 "임무"를 "업무처리"로 하고 동조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을 "업무를"로 하며 동조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를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분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등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을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으로 한다.

제13조중 "실비의 변상을 하고 상여금을"을 "실비의 상여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u>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 (목적) . . . . .<br/> . . . . . <u>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함을</u> . . . . .<br/> . . . . .</p>                  |
| <p>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u>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u></p>  | <p>제2조 (반설치) . . . . . <u>원활한 추진과</u> . . . . .<br/> . . . . .</p>  |
| <p>제3조 (확정기준) <u>반의 확정기준은 자연부락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u></p>  | <p>제3조 (확정기준)<br/> <u>반은 자연부락단위로 설치하되</u> . . . . .<br/> . . . . .<br/> . . . . .</p>                           |
| <p>제4조 (반의명칭및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u>시행규칙으로 한다.</u></p>   | <p>제4조 (반의명칭및관할구역) . . . . .<br/> . . . . . <u>규칙으로 정한다.</u></p>  |
| <p>제5조 (반장의 선출)<br/> ① (생략)<br/> ② <u>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u><br/> <u>다만, 전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u></p> | <p>제5조 (반장의 선출)<br/> ① (현행과 선출)<br/> ② <u>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총의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u></p>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③ (생략)</p> <p>제6조 (명예반장)</p> <p>① (생략)</p> <p>② 명예반장은 반사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u>돌림식으로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u></p> <p>제7조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u>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u></p> <p>1. <u>반원의 지도</u></p> <p>2. <u>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u></p> <p>3. <u>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u></p> <p>4. <u>각종사실확인</u></p> <p>5. <u>새마을사업 추진 협조</u></p> <p>6. <u>반원의 비상 연락 추진</u></p> <p>7. <u>전시홍보및주민제도 (전시에 한함)</u></p> <p>8. <u>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 (전시에 한함)</u></p> <p>9. <u>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행정 수여에 필요한 사항</u></p> |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명예반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선정하되 . . . . .</p> <p>제7조 (업무처리) . . . . .</p> <p><u>업무를 . . . . .</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 (반상회) ① (생략)</p> <p>②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br/>지도급 인사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br/>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br/>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br/>제공, 의제 제안 및 설명등 반상회<br/>운영을 주재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 (건의사항 처리)</p> <p>①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br/>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br/>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br/>또는 이 지도 담당공무원은 반상회<br/>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br/>여 면장에게 제출한다.</p> <p>②면장은 각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br/>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br/>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br/>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br/>기관 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br/>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p> | <p>제9조 (반상회) ① (현행과 같음)<br/><u>(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 (건의사항 처리)</p> <p>① . . . . .<br/>. . . . . 지원, 건의가 있으<br/>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br/>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br/>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삭제)</u></p>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③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 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p>                                   | <p>(삭제)</p>   |
| <p>④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면장에게 회보하며, 면장은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p>                                   | <p>(삭제)</p>   |
| <p>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적십자회비, 폐기물수집수수료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u>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 <p>제12조(편의제공) . . . . .<br/> . . . <u>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u> . . . . .<br/> . . . . .<br/> . . . . .</p> |
| <p>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 <p>제13조(실비변상) . . . . .<br/> <u>서 실비와 상여금을</u> . . . . .<br/> . . . . .</p>                               |